



세계법률가대회에서의 금강산댐 규탄결의

이상돈 / 中央大 法大教授・法博

I

이미 신문과 TV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의 힐튼호텔에서 「제 13 차 世界法律家大會」가 열렸었다. 우리나라가 法律家의 대규모 학술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5백명 이상의 외국의 법률가와 역시 약 5백명의 국내 법률가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끝났다.

「세계 법률가대회」는 미국의 와싱턴 D.C에 있는 「法을 통한 世界平和센터」(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라는 순수한 민간 단체가 매 2년마다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세계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고 있는데, 2년전인 1985년에는 베를린시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 서울에서 열린 제 13 차 大會에는 나잔드라·싱 국제사법재판소장을 위시하여 대법원장급 법관 10명이 참석하였으며 미국 변호사협회 회장 등 많은 저명한 변호사와 법학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의미있는 점은 「國際環境法」분과에서 북한의 금강산댐의 국제법상 不法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있는데 이는 이 분과에 직접 참가하였던 필자에게도 예상 이외의 소득으로 매우 뜻깊은 것이었다. 이하 세계법률가 대회에서의 국제환경법 분과토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술하여 볼까 한다.

II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제 13 차 세계 법률가대회는 9월 6일 저녁에 창경궁에서의 우리측 조직위원장 丁海昌법무장관 주최의 리셉션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9월 7일 오전에 정식의 개막식이 있었으며 여기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치사와 찰스·라인 大會長의 개회사가 있었다. 그리고 9월 7일 오후부터 각 분과위원회별로 주제 논문발표와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분과별 토의는 9월 10일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분과는 도합 20개로서 「국제 테러리즘」 「국제사법재판소」 「법학교육」 「매스·미디어와 법」 「국제상사중재」 「외국투자 및 통상」 그리고 「국제환경법」 등 다양한 것이었다. 필자가 참가하였던 「국제환경법」 분과는 9월 10일 오후 즉, 가장 마지막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필자가 張孝相교수(한양대 법대)와 같이 「국제환경법」 분과의 주제논문발표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 1월이었고, 4월까지 英文으로 논문을 제출토록 돼있었다. 「국제환경법」이라는 분과가 설치된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었는데 이는 이번기회를 통하여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문제를 국제적인 무대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상당히 주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III

9월 10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된 「국제환경법」 분과의 공동사회자는 미국 텐버大學의 베드·난다(Ved Nanda) 교수와 서울대 법대학장인 배재식 교수였으며, 주제 발표자는 우리나라의 張孝相 교수(한양대)와 필자, 홍콩대학 교수인 로다·무시카트(Roda Mu-shkat), 그리고 미국의 변호사인 브루스·베일리(Bruce Bailey)였다.

베드·난다교수는 인도 태생으로 뉴델리 대학과 소스·웨스턴대학 및 예일대학에서 修學 연 구한, 저명한 국제법학자로 특히 국제환경법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중진학자이며, 로다·무시카트교수는 이스라엘 출신의 여성으로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수학한 국제법학자이다. 처음에 張孝相교수가 「水路 변경으로 인한 타국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한 사례 분석」을 발표하고, 이어서 필자가 「공유수자원의 형평적 이용; 한강의 경우」를 발표하였다. 이들 논문은 물론 英文으로 작성되어서 배포되었으며 발표도 영어였으며, 일어와 한국어로 동시통역되었다. 張교수의 논문과 필자의 논문은 상당히 중복되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당일 발표시에는 張교수는 관련되는 법률이론측면을 강조하였고, 필자는 북한강과 금강산댐에 관한 사실을 주로 다루었으며, 끝으로 국제자원환경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건의하였다. 張교수와 필자와의 이러한 공동보조는 지금 들이켜 보아도 썩 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홍콩대학의 무시카트교수는 국경지대에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근국에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의 국제법상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특히 중국이 홍콩과의 국경선으로부터 불과 15km 지점에 건설하고 있는 「다야 핵발전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장내의 분위기는 국경 인근에 핵발전소나 대형댐을 건설하는 것이 인근국가에 얼마나 심각한가를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처사가 국제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데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베일리 변호사는 「보팔, 체르노빌 및 라인강 오염사고가 국제환경법에 제

기하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유명한 환경적 재난을 검토하고 특히 이제 국제 사회는 위험한 물질의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을 것을 촉구하였다.

주제논문의 발표가 끝난 후 베드·난다교수가 간단한 논평을 하였는데 그는 특히 오존층의 상실, 위험물질의 수출, 핵시설의 안전 및 금강산댐과 같이 타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가 제기하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곧 이어서 토론과 논평이 있었는데 인도, 서독, 필리핀 및 미국인 법률가 등이 발언을 하였다. 그중에서 인도의 한 참석자는 「보팔」 사건을 예로 들면서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메카니즘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몇 가지의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결의안에 관하여서는 필자를 포함한 우리측의 입장으로서는 금강산댐의 불법성을 명시하는 결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였음은 물론이나 과연 이러한 결의문이 채택될지는 의문이었다. 이는 이 大會의 규정에 특정한 국가나 정부 또는 특정한 사건을 명시하는 결의안의 채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필자 자신도 금강산댐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타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댐의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반적으로 서술된 결의안 초안을 차선책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거론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베드·난다 교수의 결심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베드·난다 교수는 북한의 금강산댐과 같은 프로젝트는 국제법에 위반되며, 또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당히 상세하고 긴 결의안을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여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참석자에 의하여 거의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 같이 특정한 사건을 예시한 결의문이 채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같이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결의는 大會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었는

데 난다교수는 「금강산댐 사건은 국제법의 극단적인 한 예시로서 포함되었으며 이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IV

이와 같은 경위로 제 13 차 세계법률가대회는 북한의 금강산댐 프로젝트의 국제법상 불법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결의는 그 자체로서는 하등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국제법의 중요한 증거로서 이용될 것이며, 또한 전 세계의 법조계에 전파되어서 상당한 여론조성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초로 국제적 무대에서 금강산댐의 문제점과 북한의 불법성이 여지없이 폭로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큰 의의가 있었다 하겠다.

이번 대회에서 「국제환경법」분야는 실로 하이라이트를 이루었다. 대개의 경우 국제학술대회의 마지막날 오후는 참가자들이 쇼핑과 관광에 정신을 쓸는 바람에 등한하여 지기 쉬운데 「국

제환경법」분야는 마지막날 오후에 열렸음에도 많은 외국인 및 내국인 참석자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는 물론 환경에 관한 관심이 법률가에게도 크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의 결의안 채택에는 베드·난다 교수의 역할이 커다. 난다 교수는 이미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는 학자일 뿐더러 자신의 모국인 인도의 보팔에서 발생한 유니온·카바이드사의 유독가스사고에 대하여 특히 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학자이기 때문에 금강산댐 사건에 대하여 우리와 더불어 크게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한다.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세계여론 밖에 없는데, 금번의 세계 법률가대회는 세계여론의 형성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였던 필자도 그러한 점에서 자그마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新明心寶鑑 6

荀子 曰士有妬友則賢交不親하고
君有妬臣則賢人不至니라

-省心篇에서 -

「순자」가 말하기를 「선비가 벗을 투기하는 일이 있으면 어진벗과 친할 수 없고, 임금이 신하를 투기하는 일이 있으면 어진 신하가 오지 않느니라」고 하셨다.

즉, 선비가 벗을 투기한다거나 임금이 신하를 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글이다.